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12월 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언

국 무 위 원 이 개 호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장 관

●대통령령 제29329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중 “전기통신송신시설”을 “전기통신송신시설·태양에너지발전시설”로 한다.

별표 3의2 제2호의 제목 중 “전기통신송신시설”을 “전기통신송신시설·태양에너지발전시설”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나. 태양에너지발전시설 | 제한없음 | 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8)·11)·15) 및 같은 표 제2호(다목 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이하일 것 3) 산림청장등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방시설, 사방댐 등 재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4) 폐기되는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의 처리계획 및 토양 오염 방지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5)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산지경관의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태양에너지발전시설 하단 주변의 서식환경에 적합한 수목·초본류 및 덩굴류(침은 제외한다) 식재계획을 수립할 것 6) 사업계획에 편입된 산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별표 5 제2호(라목)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재생에너지설비는 제외한다. | 100 | 100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에너지발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별표 3의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 법 제8조에 따라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
-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제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 법 제8조에 따라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
-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산지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산지전용에 따른 토지 가격의 상승, 산지환경의 훼손, 토사유출에 따른 주민피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는 산지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재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폐기되는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의 처리계획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에서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 재 인 인

2018년 12월 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조명래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제29330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납부의무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